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허창원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8년 8월 28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9일

3. 개정이유

-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사무 기간 만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및 재위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“재위탁”의 정의 (안 제2조제5항)
-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동의 및 보고 (안 제5조)
- 기존의 수탁기관과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규정 신설(안 제10조)
-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법적, 합목적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(안 제11조)
-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도지사가 성과평가 실시(안 제17조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정확히 규정하며, 위탁사무 기간 만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및 재위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·감독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